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3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우대공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	3

I. 개요

1. 김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83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4.

(3) 회 부 일 : 2024. 8.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4.5%)은 일반국민(2.7%)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인데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약 7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함.

또한,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취

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대비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우대공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현행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개요]

고용 관련 기존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동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본공제에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공제되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4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대기업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기본공제 중 우대공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여성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원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됨.

기본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지원되며,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이 추징됨.

또한, 정규직전환자와 육아휴직복귀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

아야 하며, 전환일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됨.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2년 2조 9,574억원, 2023년 3조 5,903억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4조 20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10,761	13,524	15,932	16,981
법인세	18,814	22,379	22,180	23,227
합계	29,574	35,903	38,112	40,208

주 1)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우대공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 (김건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우대공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u>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1,450	1,550	800	400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김건의원안 2024. 8. 14. 발의(의안번호 2839)

☐ 개정안은 우대공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에 고용여건이 열악한 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4%, ‘고용률’은 60.5%, ‘실업률’은 4.5%

로 나타나고 있음.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Delta 1.9\%p$, ‘고용률’은 $\Delta 3.0\%p$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1.8\%p$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반국민 대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상태 주요지표 비교]

(단위: %, %p)

구분	북한이탈주민(A)	일반국민(B)	차이(A-B)
경제활동참가율	63.4	65.3	$\Delta 1.9$
고용률	60.5	63.5	$\Delta 3.0$
실업률	4.5	2.7	1.8

주) 2023년 5월 기준

자료 :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 지원’으로 대답한 비율이 21.7%로 나타나 취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구분	답변비율
취·창업지원(취업알선, 취업교육 등)	21.7
의료지원(병원비, 치료비 지원)	18.1
교육지원(본인 또는 자녀의 학습관련 등)	14.3
소득 지원(장려금, 생활비 보조 등)	12.7
주택문제(배정된 주택 상태, 동네 등) 관련 지원	10.9

자료 :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청년, 장애인 등 현재 우대공제 대상이 되는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5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7.6%¹⁾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36.1%²⁾인 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60.5%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대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고용상황이 양호함.

둘째, 각 성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일반국민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 대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0.5%p,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3.0%p 높게 나타나고, 일반국민 대비 ‘남성 고용률’은 0.2%p, ‘여성 고용률’은 1.4%p 높게 나타남.³⁾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 주요지표 성별 비교]

(단위: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북한이탈주민(A)	일반국민(B)	차이(A-B)	북한이탈주민(A)	일반국민(B)	차이(A-B)
전체	63.4	65.3	△1.9	60.5	63.5	△3.0
남성	74.6	74.1	0.5	72.3	72.1	0.2
여성	59.7	56.7	3.0	56.6	55.2	1.4

자료 :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문의처
02)6788-5155

1) 통계청,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3. 7.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눈에 보는 2023 장애인 통계」, 2024. 1.
 3) 성별 구분 없이 비교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인구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여성비율(75.3%)이 더 높기 때문임.